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54
----------	------

2021년 3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2월 5일 김경우 의원의 11명
2.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3. 상정일자 :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3월 2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김경우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로부터 관리·위탁하여 재단의 사무로 규정된 ‘스페이스 살림’ 운영 업무가 2020년말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등 여성 취·창업 관련 사업이 여성가족재단의 주요 역할로 추진되고 있는 바, 서울시의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업무 위탁 조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시 위탁사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 또한 현재 유명무실한 공무원 파견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시의 재단에 대한 위탁업무에 취·창업 역량강화를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 재단에 공무원 파견 조항을 삭제함(안 제18조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시가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취·창업 역량강화”를 포함시켜 위탁사무의 범위를 현행화 하고, 현재 유명무실한 공무원 파견 조항을 삭제하여 서울시와의 관계에 있어 여성가족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다 명확히 명시하는 내용임.

2 주요사항 검토

□ 서울시의 업무위탁 범위 일자리 사업 명시 (안 제16조)

- 개정안은 서울시가 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시설 및 업무에 “취·창업 역량강화”를 포함시켜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단의 고유사무로서 서울시 행정재산인 스페이스 살림을 여성가족재단이 관리·위탁하여 2020년 말부터 시범운영 중인 바, 여성 취·창업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스페이스 살림 운영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정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u>사회참여활동 촉진 및 복지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설 및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u>	제16조(업무의 위탁) ----- ----- ----- --- <u>취·창업 역량강화, 사회참여활동 촉진, 복지증진 사업</u> ----- --

□ 재단에 공무원 파견 조항 삭제 (안 제11조제2항 신설)

- 개정안은 여성가족재단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서 이미 공무원의 파견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상 조문의 존치여부가 공무원 파견 여부에 실효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u>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u>	<삭 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2015년 6월말 이후 만 5년을 넘도록 여성가족재단에 공무원이 파견되지 않고 있으나,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현행 조례 제17조1)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정관변경 사전 승인(조례 제5조제2항),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승인, 결산서 제출(조례 제15조)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지난 2018년 서울디지털재단의 초대 이사장의 예산 전용·인사규정 위반 등으로 해임되어 1년간 공무원 파견이 이루어진 사례처럼, 여성가족재단의 운영 상의 중대한 하자나 위기가 발생하여 재단 자체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위법에 따라 필

1) 제17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단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2.>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 5.>

요시 공무원이 파견이 가능한 바, 동 조례 개정이 실제적이라기 보다는 선언적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공무원 파견 현황>

(2020년 12월 기준)

연번	기관명	설립일	조례 설치 근거	파견 근거	파견 직원 (명)	파견자 직급
1	서울의료원	'82. 9. 30.	○	×		
2	서울연구원	'92. 7. 14.	○	×		
3	산업진흥원	'98. 3. 31.	○	○		
4	신용보증재단	'99. 6. 7.	○	○		
5	(재)세종문화회관	'99. 7. 1.	○	×		
6	여성가족재단	'02. 1. 24.	○	○		
7	복지재단	'03. 12. 31.	○	○		
8	문화재단	'04. 3. 15.	○	○		
9	교향악단	'05. 6. 1.	○	○		
10	디자인재단	'08. 12. 16.	○	○	1	행정5급
11	장학재단	'09. 1. 8.	○	○		
12	평생교육진흥원	'15. 3. 12.	○	○		
13	50플러스재단	'16. 4. 28.	○	○		
14	디지털재단	'16. 5. 25.	○	○	1	행정5급
15	120다산콜	'17. 4. 24.	○	○		
16	공공보건의료재단	'17. 7. 6.	○	○		
17	기술연구원	'18. 3. 27.	○	○	1	행정6급
18	관광재단	'18. 4. 23.	○	○		
19	사회서비스원	'19. 2. 27.	○	○	2	사회5급 1명, 사회6급 1명
20	미디어재단	'20. 2. 17.	○	○	5	행정4급 1명, 행정5급 1명, 행정6급 2명, 행정7급 1명

3 종합 의견

- 동 개정안은 서울시가 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취·창업 역량강화”를 포함시켜, 서울시로부터 관리·위탁 중인 스페이스 살림 운영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간 유명무실한 공무원 파견 조항을 삭제하여 서울시와의 관계에 있어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가 인정된다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경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54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4일
발 의 자 : 김경우, 경만선, 권영희,
김용석, 서윤기, 신정호,
이상훈, 이준형, 이호대,
임종국, 장인홍, 채유미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서울시로부터 관리·위탁하여 재단의 사무로 규정된 ‘스페이스 살림’ 운영 업무가 2020년말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등 여성 취·창업 관련 사업이 여성가족재단의 주요 역할로 추진되고 있는 바, 서울시의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업무 위탁 조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시 위탁사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 또한 현재 유명무실한 공무원 파견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의 재단에 대한 위탁업무에 취·창업 역량강화를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 나. 재단에 공무원 파견 조항을 삭제함(안 제18조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나. 예산조치 :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사회참여활동 촉진 및 복지증진 사업”을 “취·창업 역량 강화, 사회참여활동 촉진, 복지증진 사업”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정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u>사회참여활동 촉진 및 복지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설 및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u></p> <p>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u>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u></p>	<p>제16조(업무의 위탁) ----- ----- ----- --- <u>취·창업 역량강화, 사회참여활동 촉진, 복지증진 사업</u> --- -----</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